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165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2일
중 소 기 업 청 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을 제고를 위하여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해당 입찰 건에 대한 입찰절차의 일시 중지 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499호)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한 중소기업청장의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규정
(안 제18조의2 신설)

- 1)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로서 제2조의3 각 호의 경우
- 2)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로서 제7조제1항 각 호의 경우
- 3) 법 제12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로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경우

3. 의견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공공구매제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제도과
(전화 : 042-481-8919, Fax : 042-472-7932)